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50호 2016. 4. 28(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6-97호 사천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6-100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 7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450호(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6-97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천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연안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1. 계획의 개요

가. 수립근거: 「연안관리법」 제9조제1항

나. 계획의 성격

- (1)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연안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조정계획
- (2)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개발에 관련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

다. 계획의 범위

(1) 연안해역

- 바다(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와 바닷가(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2) 연안육역

-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사 천 시 공 보

제450호(3)

라. 공간적 범위

연안면적	육역면적	해역면적	비 고
169.202 km ²	58.377 km ²	110.825 km ²	

2. 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1) 비전 : 해양·문화·관광이 공존하는 청정도시 조성
- (2) 목표
 -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
 - 해양수산 청정산업도시
 - 친환경 녹색연안도시

나. 추진방향

- (1)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증진
 - 광포만 갯벌의 생태조사, 습지보호지역 지정 검토 및 관리방안 마련
 - 남강댐 방류수에 대한 연안관리방안 수립
 - 지속가능한 어업환경과 어촌 정주기반조성
- (2) 기후변화대응 및 재해 대응강화
 - 연안 침수·침식 가속화에 대비한 사전관리방안 마련
 -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을 위한 해양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 바이오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추진
- (3) 연안 거버넌스 구축
 - 시민 참여형 민·관·산·학 연안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갯벌 등 해양환경·생태 공동조사 추진
 - 남강댐관리단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지속가능한 그린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사 천 시 공 보

제450호(4)

(4)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 자연보전과 경관파괴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개발계획 통제·관리기능 강화
-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훼손된 경관 복원 등 적극적인 해양환경 조성
- 사천만 오염총량제 도입 검토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연안해역의 용도구분

- 연안해역은 이용 실태, 자연 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1) 이용연안해역 :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 항만구 :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항로구 :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어항구 :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레저관광구 :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수욕장구 :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광물자원구 :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중(海中)문화시설구 : 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2) 특수연안해역 :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해양수질관리구 :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양조사구 : 해수 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재해관리구 : 해일, 파랑,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사 천 시 공 보

제450호(5)

- 군사시설구 :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산업시설구 :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양환경복원구 :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3) 보전연안해역 :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양생태보호구 :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경관보호구 :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공원구 :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어장구 : 마을어업, 양식어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양문화자원보존구 : 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4) 관리연안해역 : 연안해역중 이용연안해역·특수연안해역·보전연안해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 상기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의 구분에 따른 기능구

사 천 시 공 보

제450호(6)

나. 사천시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 현황

용도 해역	기능구	위치	면적(m ²)	경계기준
이용 연안 해역	항만구	삼천포항	570,755	삼천포항 항계선, 한려 해상국립공원구역 중첩
		삼천포마리나항	129,618	마리나항만 기본계획구역
	항로구	삼천포항	2,814,786	삼천포항 정박지
	어항구	신수항	129,415	국가어항구역 경계
		늑도항	38,346	지방어항구역 경계
		대포항	22,879	〃
		중항항	18,553	〃
		낙지포항	36,224	〃
		어촌정주어항(40개소)	1,324,189	어촌정주어항구역 경계
	레저관광구	실안관광지	268,137	
		비토관광지	562,192	
	해수욕장구	남일대해수욕장	52,811	백사장 끝
보전 연안 해역	수산생물자원 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역	40,808,474	수산자원보호구역 경계
	해양생태 보호구	악도(솔섬)	81,577	특정도서 주변 100m
		학도	78,043	〃
		우무도	78,311	〃
		향기도	99,974	〃
공원구	한려해상국립공원	19,882,784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삼천포항 중복지점	

4. 참고사항

- 사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전체내용 및 도면 등은 사천시청(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 055-831-312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450호(7)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6-100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어업면허 내역

면 번 호	어업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면적 (㎡)	면 기 한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사 천 제57호	패류양식 (살포식)	사천 서포 내구	50,000	'16.05.02. ~'26.05.01.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	사천수산업 협동조합	사 천 제6호 재개발

2016년 4월 28일

사 천 시 장